
5·18 헌법수룩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세미나

일시: 2023.10.25.(수)

장소: 서울특별시청시민청 '태평홀'

제목	발표자	페이지
개회사	정광제	1
주요 국가의 헌법 전문 비교	김태식	3
헌법 전문과 역사적 사건	김기수	19
5·18 이념에 대한 질문	김대령	25
5·18 헌법수룩에 반대하는 이유	강휘중	35
5·18 정신이 뭐길래?	김동문	41
5·18 헌법수룩 반대 세미나 참석 소감	김대령	49
미래세대 선언	변성필	53

개 회 사

정광제 (한국 근현대사연구회 고문)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 기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의 기초입니다.

한일병합기를 무엇이라고 기억하느냐, 이승만을 누구라고 기억하느냐, 김구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느냐, 6·25를 무엇이라고 기억하느냐, 5·18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한 개인의 정체성인 것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5·18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대사는 해당 인물들이 아직 살아있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해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라고 부를 수 없는, 아직은 사태와 기록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작금에 이러한 대표적인 현대사인, 현재 진행형인 5·18을 헌법전문에 게재한다는, 참으로 무지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태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의 하나의 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전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듯이, 어제의 추한 한 사건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토대인 헌법전문이 오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5·18과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헌법전문에 5·18을 게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더 나아가 우리 헌법에 북한의 방점을 찍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가 역사의 주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역사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허망한 세월, 광대 놀음을 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 국민 포럼의 취지와 내용이 부디 대한민국 모든 애국시민들의 뜻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주요 국가의 헌법 전문 비교”

발표: 김태식



주요 국가의 헌법 전문 비교

김태식 전 주독일 국방무관

1. 서론

전문은 말 그대로 앞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책의 서문과 같다. 전문이 맨 앞에 들어가다 보니 국가별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헌법 전문에 기술했다.

외국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헌법 전문을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역, 언어, 종교, 정치체제 등을 고려하여 대표할 만한 일부 국가를 선정했다. 그 결과 다양한 헌법 전문을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선정한 국가의 헌법 전문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 아랍어, 튀르키예, 러시아어, 중국어로 쓰여 있다. 그러나 모든 원문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번역한 외국의 헌법을 참조했고 영어와 독일어 헌법은 원문을 직접 살펴보았다. 기타 외국어 번역본은 영어 번역본을 참조했다. 원문과 한국어 번역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 번역본은 부분 수정하여 인용했다.

외국의 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나라별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포함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2.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어보아야 다른 국가의 헌법 전문과 비교할 수 있다.

- 형식상 장문이고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침표가 하나이다. 장문은 단문과 비교했을 때 명확한 의미 전달이 제한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처음에 쓰여 있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이어서 20세기에 벌어진 주요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다.

1919년 3·1운동은 일본에 저항한 운동이고, 1960년 4·19는 이승만 정부에 항거한 운동이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헌법에 기술한 내용이 20세기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주요 국가의 헌법 전문

유럽의 헌법은 대부분 간결하며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기술하고 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부 유럽 국가가 소련의 통제하에 공산국가로 되었다. 이들 국가는 1980년대 말 소련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했다. 이들 국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1) 서부 유럽

1) 독일

독일 국민은 하나님(Gott)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 (Vereinte Europa)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 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르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쉘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겐 주(州)의 독일인은 자유롭게 자기결정권을 갖고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했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독일 헌법(Verfassung)은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불리는데 전문이 두 문장이다.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고 간명하다. 역사적 사실이 전혀 없다.

- 헌법 제정 주체는 ‘독일 국민’이다. 독일 국민 앞에 꾸며주는 수식어가 없다.
- 독일 국민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다. 특정 대상을 언급하는 것이 특이하다. 독일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국가이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하기 이전에 사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규범

은 기독교였다. 그래서 헌법에 기독교 관련 사항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독일 기본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 그다음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한다. 제1,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인식하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했다.
- 마지막으로 독일연방을 구성하는 16개 주(州)가 통일과 자유를 완성했다고 썼다. 동·서독은 1945년 분단되었다가 1990년에 다시 통일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인민의회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독일의 헌법이 된 기본법이 일부 (기본법 전문, 기본법의 적용 범위 및 통일 관련 조항 등) 개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독이 분단되면서 서독에서는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5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했다.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후 1919년 제정되었던 독일 헌법(Weimarer Verfassung,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자본주의국가의 헌법 중에서는 가장 민주적이었다. 독일 제국은 1918년 11월 7일에 발생한 독일 11월 혁명 이후에 붕괴했다. 이듬해 8월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했다. 바이마르 헌법의 일부 조항은 현재의 독일 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바이마르 헌법은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2) 스위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州, **Kantone**)는,
 천지창조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한 연대의식과 개방정신으로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 다양성을 조화롭게 영위할 것을 다짐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강력함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

- 스위스 헌법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언급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개혁을 한 나라답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술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종교 관련 사항이 헌법 전문에 반영되었다. 이것은 헌법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 두 번째로 천지창조를 언급한다.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말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넣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이 세속세계를 다루는 법인데도 천지창조를 언급한 이유가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헌법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 헌법 제정 주체는 ‘스위스 국민과 주(州, *Kantone*)’이다.
-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다.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3) 프랑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위의 원리 및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에 대하여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구상된 새로운 제도를 제공한다.

- 프랑스 헌법에서는 준수할 의무와 권리를 제일 먼저 언급한다.

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이다.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막을 내렸다.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②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1946년 헌법 전문)

제1조: 인간을 노예화하고 비하하려고 시도한 정권에 대해 자유 국민이 승리한 다음 날, 프랑스 국민은 인종, 종교, 신조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권리 선언에 의해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공화국 법률이 인정한 근본원칙을 엄숙히 재확인한다.

③ 2004년 환경헌장

프랑스 국민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자연 자원과 자연계 평형 덕분에 인류가 출현했다.

인류의 미래와 존재 자체는 인류의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환경은 모든 인류의 공통 유산이다.

(중략)

이로써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하 생략)

-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

(2) 동부 유럽

1) 슬로바키아

우리 슬로바키아 국민은,

선조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유산 그리고 국가 존립 및 독립된 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수 세기의 경험을 명심하고,

키릴로스(Cyril)와 메토디우스(Methodius)의 정신적 유산과 대모라비아(Great Moravia)의 역사적 유산을 잊지 않고,

자결권이라는 국가의 자연권을 인식한 속에서,

슬로바키아 공화국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 소수자와 민족 그룹들과 함께,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의 평화적인 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민주적 정부 형태, 자유로운 삶의 보장, 정신적 문화와 경제적 번영의 발전을 추구하며

이로써, 우리 슬로바키아 공화국 국민은 우리의 대의원들을 통해 본 헌법을 채택했다.

-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동구 공산권이 붕괴할 즈음에 국민 투표를 통해 1993년 1월 1일 자로 체코와 평화롭게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슬로바키아 헌법 전문에는 오래된 역사를 기술한다.

“선조들의 정치적 및 문화적 유산”

“수 세기의 경험”

- 그리고 약 1,200년 전의 종교인 두 명과 1,100년 전의 슬라브족 국가(833~906)를 언급한다.

키릴로스(Cyril)와 메토디우스(Methodius)

키릴로스(827~869)는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수도사, 신학자, 선교사이자 언어학자였다. 그는 형인 메토디오스(815~885)와 함께 슬라브족에 대한 선교 사업에 나서 슬라브족을 기독교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메토디오스(826~885)는 비잔티움 제국의 기독교 신학자, 선교사이며 대모라바 왕국의 대주교였다.

대모라비아 왕국은 9세기에 7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중앙유럽에 존재한 슬라브족 국가이다. 현재의 체코 모라비아와 주변 지역에 있었으며 건국자들은 체코인과 슬라브족의 조상들이다.

2) 체코

보헤미아, 모라비아 및 실레지아에 거주하는 우리 체코공화국 국민은 독립된 체코 국가가 복원될 시기에,

- 체코슬로바키아 국가뿐만 아니라 체코 왕국 영토의 모든 오랜 전통에 충실하며,
-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신성함 정신으로 체코공화국을 건설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을 결의했고,
-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타인에 대한 의무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는 자유시민의 조국으로서,
- 인권의 존중 및 시민사회의 제반 원칙을 바탕으로 창설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 유럽 및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 자연·문화·물질·정신적 유산을 보호 및 개발하기로 결의했고,
- 법치국가의 입증된 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을 통해 본 체코공화국 헌법을 채택한다.

- 체코가 독립 국가로 탄생할 때 이 헌법을 제정했다고 언급한다. 체코는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 독립했다. 체코 민족은 대부분 서슬라브 쪽에 속하는 체코인으로 인구의 약 90% 정도를 차지한다. 체코를 구성하는 지역은 크게 보헤미아(체히), 모라비아, 실레시아(슬레스코) 세 지방이다.
- 체코로 독립하기 이전의 체코슬로바키아 시기는 물론 체코 왕국 시기의 오랜 전통

에 충실하다고 강조한다.

- 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코공화국의 건설, 보호, 발전
 - 자유시민의 조국
 - 자유민주주의 국가
 - 법치국가

3) 폴란드

우리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주권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회복한 1989년에
 우리 폴란드 국민 - 폴란드 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진리와 정의, 선과 미의 근원으로서 하느님을 믿으며,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나 다른 근원에서 도출되는 보편 가치들을
 존중하며
 폴란드 공익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며,
 큰 희생을 통하여 달성한 독립, 민족의 기독교적 유산과 보편적 인간의 가치에 뿌
 리내린 우리의 문화를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투쟁에 힘입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훌륭한 전통을 돌아보면서,
 천년이 넘는 우리의 유산 중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의
 무를 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하나가 되어,
 가족으로서의 인류의 가치를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우리 조국에서 짓밟혔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영원히 보장할 것과 공공조직의 업무에서 근면과 효율을 확보하기
 를 희망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또는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면서,
 이에 자유와 정의에 대한 존중, 공권력 상호 간의 협력, 사회적 대화 및 국민과
 그들 공동체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보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이 폴란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다.
 우리는 이 헌법을 적용할 모든 이들에게, 제3공화국의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
 한 존엄성, 남성 또는 여성의 자유권, 다른 사람과 연대할 의무, 그리고 폴란드공
 화국의 흔들릴 수 없는 기초로서 이들 원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 1989년 9월 13일에 폴란드에서 비공산 연립정권이 출범했다. 폴란드 역사에서는
 이 시점부터의 폴란드를 제3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운명을 주권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회복한 1989년에”

-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이고 하느님을 언급한다.
“진리와 정의, 선과 미의 근원으로서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 앞에서”
- 또한 기독교 이외의 “다른 근원에서 도출되는 보편 가치들을 존중한다”라고 언급한다.
- 현재의 제3공화국 이전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언급한다.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기술하며 특정 국가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투쟁”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훌륭한 전통”
“천년이 넘는 우리의 유산”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우리 조국에서 짓밟혔던 쓰라린 경험”

(3) 아메리카(미합중국)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 헌법 전문이 간단명료하다. 단 한 문장이고 독일 전문보다도 짧다.
- 미합중국 건국자들은 정부의 권위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경우에만 정부가 합법적일 수 있다고 믿었다. 미합중국 건국자들은 누구도 자신의 출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치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 헌법을 제정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다.
연방, 정의, 안녕, 공동방위, 국민복지, 자유와 축복.
- 미합중국은 독립전쟁을 치르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종교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다.

(4) 아프리카(남아프리카)

우리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건국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존중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속하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함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위해, 자유롭게 선출된 우리의 대표를 통해 본 헌법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채택한다.

-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적 가치, 사회 정의 및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사회를 건설
- 통치의 기반이 국민의 의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 받는 민주적 열린 사회의 기초를 마련
-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함
-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연합된 민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건설

우리 국민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Nkosi Sikelel' iAfrika. Morena boloka setjhaba sa heso.

God seën Suid-Afrika. 하나님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축복하소서.

Mudzimu fhatutshedza Afurika. Hosi katekisa Afrika.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그런 아픈 역사를 언급하고 그런데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기술했다. 피 튀기는 표현이 전혀 없다.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과거의 분열을 치유하고”

- 그리고 전문 끝에는 주요 현지 공용어로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한다.

(5) 근동(중동)

1) 튀르키예

이 헌법은, 튀르키예 국민과 영토의 영구 존속 그리고 튀르키예 국가의 단일체를 확고히 하면서,

민족주의와 불멸의 지도자이며 불패의 영웅인 튀르키예 공화국의 국부, Atatürk가 주창한 민족주의 그리고 그의 개혁 및 원칙에 따라

튀르키예 공화국의 영구한 존속과 번영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지키고 세계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국제사회의 고결한 일원으로서 동시대 문명의 기준을 달성하고자 결의하면서,

(중략)

Atatürk의 민족주의, 원칙들, 개혁과 현대화에 반하는 활동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바, 어떤 경우에도 신성한 종교적 신념이 국가 업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인식;

(중략)

따라서, 튀르키예 헌법은 헌법의 문언과 정신에 대한 존중과 절대적 충성을 요구한다.

튀르키예 국민은 이 헌법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녀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바친다.

- ‘아타튀르크’가 튀르키예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튀르키예어: 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는 튀르키예에서 독립 영웅이자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육군 장교, 혁명가, 작가이며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자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다.

“민족주의와 불멸의 지도자이며 불패의 영웅인 아타튀르크 공화국의 국부”

- 튀르키예 국회는 1934년 ‘튀르키예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타튀르크’ 경칭을 수여했고 공공건물이나 거리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꿨다.

2) 이라크

가장 자비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우리는 두 강 사이의 땅, 사도와 예언자들의 고향, 덕망 높은 지도자들의 거처, 문명의 선구자, 저술의 창시자, 숫자의 요람에 사는 국민이다. 우리 땅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고국의 정책을 위해 가장 유서 깊고 공정한 계약이 새겨졌으며, 우리 땅에서 예언자의 동반자와 성인들이 기도하였고,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이론을 세웠으며, 작가와 시인들이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였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알라) 신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 조국과 국민의 소명을 이행하고, 종교적, 국가의 부름과 우리의 위대한 (종교적) 권위자와 지도자, 개혁자의 결단에 응하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의 국제적 지원 속에서 사상 최초로 2005년 1월 30일 수백만 명의 남녀노소 국민이 투표소로 행진하였으니, 독재 일당이 자행하고 이라크의 순교자, 시아파와 수니파, 아랍족과 쿠르드족, 투르크멘족, 여타 민족의 비극이 불러온 교파 간 박해의 고통을 상기하고,

(중략)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막 일어서서 공화, 연방, 민주, 복수정당 제도를 통해 미래를 당당하게 바라보는 우리 이라크 국민은

(이하 생략)

- 유럽의 일부 국가가 하나님을 언급하듯이 이라크 헌법 전문에는 첫 번째로 알라신을 언급한다.

“가장 자비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우리를 주재하시는 신의 섭리를 인정”

-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언급한다.
- “두 강 사이의 땅” (바빌론)
- “사도와 예언자들의 고향”
- “우리 땅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법률이 통과”
- “사상 최초로 2005년 1월 30일 수백만 명이 투표”
- “교파 간 박해의 고통을 상기”
- “어두운 과거를 회상”
- “민족 탄압의 수난”
- “지난날의 과오를 딛고 막 일어서서”

(6) 공산국가

1) 러시아

러시아연방의 영토 내에서 공동운명체로 결합된 다민족인 우리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시민의 평화와 합의를 확립하면서,
 역사 속에서 키워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면서,
 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보편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
 역하면서,
 러시아의 주권국가 체제를 부흥시키고 견고한 민주적 기반을 옹호하면서,
 러시아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 앞에 조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면서 러시아연방의 헌법을 채택한다.

- 러시아 헌법 전문은 형식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 다른 유럽 국가처럼 간결하다.
- 그러나 동부 유럽 국가처럼 역사를 언급하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갖추
 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민족의 해방·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원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과 그 밖의 형식의 투쟁을 겪고 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략)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중략)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하였고,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 중공의 헌법 전문은 역사 요약서와 같다. 분량이 A4 종이 기준으로 3장이고 내용이 가장 길다.
- 중공은 역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19세기부터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열한다.
 -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
 - “1840년 이후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
 - “1911년 쑨원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
 - “1949년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
 -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중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소위 북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만을 찬양한다. 사이비 종교 그 이상이다. 분량이 A4 종이 기준으로 2장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세계 지역별로 여러 나라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에 따라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		
없음	구체적으로 기술	포괄적으로 기술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합중국	튀르키예(인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남아프리카
러시아	중공(인물), 북한(인물), 이라크	

분량 면에서는 미국 헌법 전문이 가장 짧고 간결하다. 추구하는 내용도 명확하다. 유럽의 국가는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되어서인지 인권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 관련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중공과 이라크의 헌법 전문은 분량도 많고 역사적 사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열되었다. 소위 북한 헌법은 헌법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 튀르키예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튀르키예가 중공이나 북한처럼 기술하지 않았지만 왕정 국가와 비슷한 이미지이다.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특정 인물을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헌법은 법만의 영역이 아니다. 헌법은 언어의 영역이기도 하다. 추구하는 개념을 헌법에 기술하려면 정확한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언어가 생각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의 헌법 전문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간결한 문장에 추구하는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지 감탄한다. 더하고 뺄 것이 전혀 없다.

옷을 잘 입는 남자는 한 색깔 옷만 입는다. 검은색 양복과 흰색의 셔츠 그리고 단색 넥타이를 맨다. 이런 사람은 한눈에 들어온다.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명확하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멋을 내려고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 나름 멋을 내려고 했지만 정작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국가의 헌법은 한 나라의 근간이다. 시간이 지나도 불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헌법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헌법 전문과 역사적 사건”

발표: 김기수



헌법 전문과 역사적 사건

김기수 변호사

1. 헌법은 개정의 한계가 있는가?

근대국가로의 발전이 늦은 국가일수록 대륙법계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륙법을 계수한 제국주의 일본의 영향으로 대륙법 특히 독일법의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독일 기본법의 영향이 적지 않으며 국내 헌법학자들 대부분 독일법 전공자에 속한다. 독일의 법철학은 자연법을 부인하는 법실증주의의 영향이 지대하다. 법실증주의의 대가인 엘리네크는 ‘법은 사회적인 사실이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하면서 ‘법은 완성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엘리네크에 따르면 국가는 스스로 법을 만드는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이므로 어떤 구속도 없이 스스로 규범을 창출하기 때문에 헌법은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면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1919년 제정한 바이마르헌법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칼 슈미트는 엘리네크의 국가 대신에 ‘헌법제정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이 자신의 존재 형태에 대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논리나 사상에 의하여 정당화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근본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해서 헌법률만 개정할 수 있고 근본헌법은 개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엘리네크나 칼 슈미트나 ‘성문헌법’이 되기만 되면 스스로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펴는 점에서는 모두 법실증주의자에 속한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현상학’에 바탕을 둔 ‘통합주의’라는 헌법 이론이 등장하였으나 이 또한 법실증주의에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칼 슈미트가 헌법개정의 한계로 든 근본규범 역시 개념이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점에서 자연법과는 다른 개념이다. 칼 슈미트가 주장한 근본규범도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헌법제정권력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본헌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엘리네크 헌법을 국가가, 칼 슈미트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국가나 국민이 만들기만 하면 어떤 헌법도 자체로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모두 진정한 의미의 법실증주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치가 등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법은 자기는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보편타당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타당성이 없다면 법이 규범력을 가지기 어렵다. 법이 이러한 규범력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법실증주의자들은 ‘힘’ ‘권력자’에 의하여 명령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은 그 내용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면 규범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

법이 성문헌법이기는 하지만 내재적으로 헌법개정의 한계가 되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이 개정되면 헌법의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우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 국가권력이 근거이자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이기도 하다. 헌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표지다. 국가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문제이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받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규범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역사적 사실을 최고 규범인 헌법에 삽입한다는 것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그 역사적 사실은 법실증주의자 엘리네크가 말한 ‘완성된 사실’이 되어 국민적 동의는 자동으로 의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개정 권력을 가진 정치권력의 자기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를 법적으로 포장해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헌법에 삽입되는 순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내심 동의하지 않거나 헌법전문 개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들의 경우 그들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에 국민 100%가 투표에 참여하고 100%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결과는 피할 길이 없다. 역사적 사실이 헌법개정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삽입되면 전면적인 국민 의식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의 양심과 사상을 교정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로서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헌법은 역사적 사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정신 교화’ ‘노동학습소’를 통한 사상개조가 정당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 삽입된 헌법은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보편타당한 법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된다.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실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공자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영예(榮譽)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역사적 사실로 3·1운동과 4·19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헌법 제11조는 근대국가의 헌법으로서 손색이 없는 조항이지만 헌법 전문은 전근대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적 특수계급이 엄연히 존재한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드는 것은 이미 법률로 공인되었다. 5·18을 헌법전문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법률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주장 자체가 5·18 유공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배제하는 특수계급의 창성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스스로의 자기부정이면 자기 정체성 혼란에 다름이 아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인, 역사 연구자들, 언론인, 지식인들이 법다운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치를 탄생시킨 법실증주의는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 있다.

2.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미래 세대에 과거 역사의 주인공을 숭배하라는 명령과 다름이 없다. 지나간 역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알뜰한 정치 상술에 다름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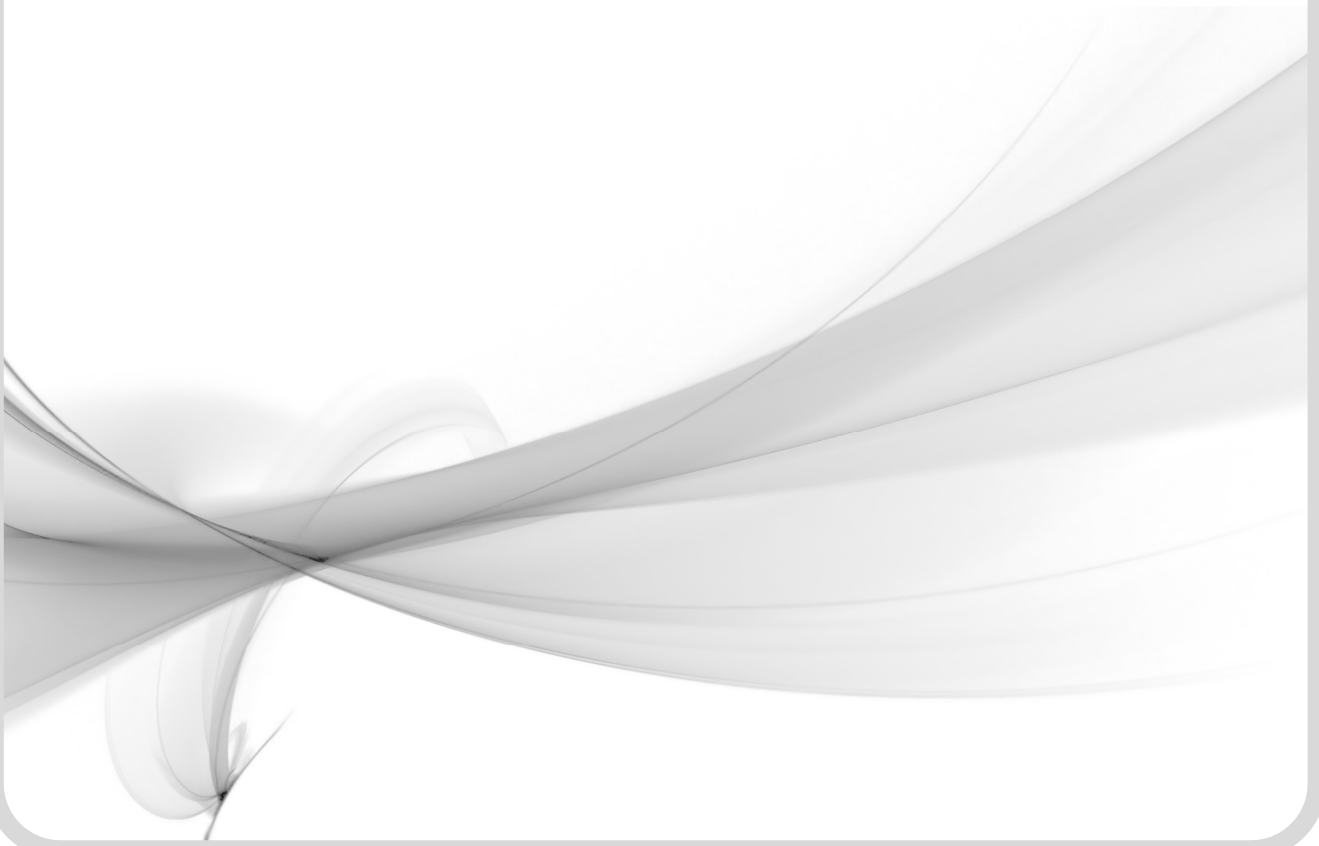
지난달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등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진상 규명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5·18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5·18 헌법 전문 수락을 주장한 국회의원들부터 출선수범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헌법수락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먼저다. 5·18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서 먼저 다뤄진 사건이다. 2021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봉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며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법이다.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미래로 나가는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의 헌법수룩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급하다.

“5·18 이념에 대한 질문”

발표: 김대령



5·18 헌법 수록 발의자에게 묻는 5·18 이념에 관한 질문

김대령 재미사학자

지난 8월에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이 5·18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발의를 하였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정신을 위해서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을 때 5·18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발의를 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높은 서열 당원 정율성은 '조선인민군행진곡'과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한 자요,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의 남침을 지원한 자임에도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정율성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5·18 헌법수룩 발의는 하태경, 성일종, 이학영 의원이 하였지만 그 배후는 강기정 광주시장이다. 지난 5월 17일 강기정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라고 촉구하자 하태경, 성일종, 이학영 의원이 발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기정 광주 시장과 한 배를 타고 있다.

5·18 헌법수룩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강기정 시장이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시각에서, 침략군의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재단하겠다는 것이다. 5·18 정신과 광주정신은 같은 말이고, 광주정신 헌법수룩을 5·18 헌법수룩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자명하다. 그 의도는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의도와 같은 것으로서 특정 이념으로 한국인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5·18 헌법수룩을 발의한 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강 시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처럼 아직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 5·18을 헌법에 수록한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기에 국민이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5·18 유공자의 공적을 숨기거나 공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5·18을 헌법에 수록하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과거 문익환 목사 비서였던 하태경 의원이 지금 5·18 헌법수룩 발의자이다. 문익환 목사가 광주시민군이었는가? 북한 조국통일상 수상자 문익환이 5·18 유공자일 때 5·18 정신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남한에 5·18 유공자가 있듯이 북한에 공화국 영웅이 있다. 문익환은 북한에서 1989년에 문익환 기념우표를 발행하였을 만큼 북한에서 영웅 대우를 받은 인물인데, 어째서 그가 5·18 유공자인지를 과거 그를 보좌하였던 하태경 의원이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가짜 광주사태 희생자 사진에 속은 세대이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이 1987년에 출간한 광주사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북한 원전으로

분류되는 책이며, 그 시절 대학생들이 본 처참한 희생자 사진은 광주사태 희생자 사진이 아니라, 북한이 광주사태를 선동하는 뼈라에 사용하였던 가짜 희생자 사진들이었다. 가짜 사진 사기극과 2천 명 사망설 유언비어로 5·18 정신이 설명되는가?

단지 명칭만으로 5·18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되지도 않는다. 1988년 8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광주사태 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승격하자고 발표하였을 때 광주단체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광주민중항쟁이란 명칭을 고수하였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자 광주단체들이 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수용하였으나 오랜 기간 그 명칭을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단체들 스스로는 왜 5·18이 민주화운동인지를 설명하거나 입증한 적이 없었다.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역대 정부도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여야 할 이유를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 만약 5·18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월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리가 있겠는가? 아직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5·18진상조사위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학가의 광주사태를 이슈로 하는 반정부 데모는 사노맹이 주도하였었는데, 사노맹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격한 시위를 조직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유는 정반대였다. 하태경 의원은 주사파 출신이고, 주사파의 5·18이론 경전은 사노맹 지도자 백태웅이 1989년 5월에 “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동 논문에서 이정로라는 필명으로 백태웅은 광주사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므로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안되고 광주무장봉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인민민주주의혁명(PDR)’ 계열의 ‘민족민주혁명(NDR)’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 후 주사파는 “광주무장봉기의 목적은 ‘인민민주주의혁명(PDR)’ 계열의 ‘민족민주혁명(NDR)’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들의 5·18 이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한 적이 없다. 사노맹 지도자들 중에 광주운동권 내부자와 최측근이 있어서 그들은 일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태경은 주사파에서 전향하였다고 하여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다. 주사파에서 우파로 전향하는 것은 민족민주진영에서 자유민주진영으로 전향하는 것이다. 5·18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인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5·18을 헌법에 넣자고 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전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월 7일 방송통신위에 온라인상 5·18 가짜뉴스를 삭제 요청하겠다고 한 지 두 달 만에 5·18 헌법수룩 발의를 하였다. 그래서 하 의원의 속셈은 5·18 헌법수룩을 5·18의 객관적인 실체 연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그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 가입하였던 1977년 초

겨울에 임현영과 이재문 등 남민전 동지들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신년 인사문을 작성했음을 잘 알 것이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알려진 이 서신의 요지는 “현재 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상태인 남조선을 북조선 수령인 김일성이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이 지원군을 보낼 때 북한군과 연합할 남민전 군사조직을 혜성대라고 불렀었고, 혜성대의 무장봉기 예행연습이 강도행각이었다. 1979년 4월 27일 밤 10시경 이학영이 차성환과 박석률과 박석삼 등 혜성대 대원 8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0의 8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함께 들어가 경비원 김영길(金永喆, 26) 씨를 길이 20cm 과도로 가슴 어깨 등을 찌르고, 최 회장 비서 이광식(李光植, 25) 씨를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집안을 뒤지다 경비원 김영길 씨가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모여들자 모두 금도끼만 달랑 들고 도망가고 한 명은 주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이런 강도행각 도중에 붙잡힌 한 명이 바로 5·18 헌법수록 발의자 이학영이다.

남민전 사형수 신향식이 바로 이학영의 혜성대 대장이었다. 한 좌파 학자는 그가 1992년에 월간 '사회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신향식과 이학영 등 혜성대 대원들이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는 신향식의 혜성대는 '무장이 수반된 무장봉기'를 혁명 수단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었으며, 강도행각을 벌인 이유도 단순히 남민전 자금 조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장 선전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무장력의 전위적 담보제로서 그런 활동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 좌파 학자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학영 의원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지만 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똑같은 말을 한다. 조희연은 그가 1991년에 쓴 논문 "1970년대 조직사건에 대한 연구 ('남민전'을 중심으로)."에서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의 강도행각은 '무장이 수반된 대중봉기'를 위한 도시게릴라전 예행연습이었다고 기록한다. 조희연에 따르면 혜성대는 이학영의 현장 체포된 1979년 4월의 강도행각을 '땅벌 1호 작전'이라고 불렀다.

동 논문에서 조희연은 1978년 10월에 창설된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는 '무장이 수반된 대중봉기'의 선봉부대의 창설 준비를 위해 창설된 것이었다고 밝힌다. 즉, 광주사태 때 시민군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시민군 창설 준비를 하려는 시도가 1978년부터 있었다. 조희연에 따르면 신향식과 이학영의 혜성대는 무장 선전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부대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희연은 또 “남민전은 1978년부터 카빈총 및 실탄, TNT와 뇌관 등 군사적인 장비를 구득(求得)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밝히는 바, 신향식과 이학영이 시작했던 일을 1980년 봄에 이학영의 동지 윤한봉이 이어간 것이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 사전 준비였다.

동 논문에서 조희연은 또 남민전의 목표가 월남을 패망케 한 베트남을 모방한 반미 민족해방운동이었다고 밝힌다. 5·18의 이념 역시 반미 민족해방운동이다. 조희연은 청학위 등 남민전 하부조직들이 광주사태를 조직하였음을 그의 논문에서 시사하였다.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송선태가 바로 광주사태 발생 한 주 전에 ('무장봉기의 도상

계획서' 혹은 '자유노트' 등으로 불리는) 무장폭동계획서를 작성한 자였던 바, 그는 그 계획서 전문에 남민전 하부조직 민학련 강령해설의 정세관을 그대로 실으며 부르주아 민족혁명을 일으키자고 하였던 것이다. 5·18 기록물에서 '부르주아 민족혁명' 등의 문구에서 쓰이는 '부르주아'가 주사파 용어로 '인민민주주의'이다.

광주 조폭이자 가짜 5·18 유공자 문흥식을 도와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준 성일종 의원도 5·18 헌법수룩 발의자이다. 문흥식이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단체의 다수를 차지하는 가짜 유공자들이 뭉쳐 가짜에게 표를 주기 때문이었다. 가짜 유공자가 득표에 유리한 회장 선거에서 문흥식은 광주단체 회원들이 국고 지원을 받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으로 2019년 12월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5·18단체장이 되었다.

문흥식이 일사천리로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협조였다. 2021년 1월 26일 '전남도청 항쟁지도부' 등 6개 단체가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에 제출했다. 문흥식 회장이 5·18 사적인 나주 금성파출서를 개인 사업장으로 활용하려 하였고, 사업 대가로 수익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였다.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는 2월 18일의 기자회견에서 문흥식은 “공갈 협박 갈취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 왔다”라고 밝혔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그의 계획을 믿어주었고, 그가 분양권을 쥐고 있었던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참사로 9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만들려는 문흥식의 계획은 완성되었다.

가짜 5·18 유공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조폭도 광주단체장이 되면 정치인들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가짜 5·18 유공자가 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 아닌가? 이미 광주단체들은 가짜가 다수를 차지하여 점령하였을 만큼 가짜 유공자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5·18을 헌법에 수록하기에 앞서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밝히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고등학생 유공자 윤기권의 광주정신은 시민군 활동 보상금 2억 원 수령 후 아버지가 수령 품에 안기겠다며 월복한 것이었다. 시민군 출신 중 최고의 지식인 김완섭의 광주정신은 “유관순은 여자 깡패”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공적이 널리 알려진 전옥주는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전옥주는 선동에 능하였지만 그녀의 가두방송 내용은 모두 허황된 거짓말이었다. 처녀이면서 자식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두환아 내 자식을 살려놓아라”고 외쳤고, 2남매의 막내이므로 남동생이 없으면서 남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가두방송하였다. 그런 거짓말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전옥주의 거짓말을 공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전옥주는 증오심을 유발하는 무기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였다. 1979년 하루 상무대를 방문한 것 외에는 5월 20일 광주에 처음 온 전옥주가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군용지프와 타이탄 트럭을 번갈아 타고 다니며 군인들을 찢어 죽이자고 선동하는 가두방송을 하였다. 광주시민들이 그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나 광주시민도 아닌 그녀에게 남동생도 자식도 없었기에 그런 극단적인 증오심을 선동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국군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전옥주의 선동술은 이미 충분히 미화되어왔다. 그러나 거짓말로 증오심 유발을 선동한 것은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만한 공적은 아닐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5·18 재판 판결에서 전옥주는 헌법기관이다.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는 유혈투쟁에 혹은 무장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헌법기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사실에 위배된다. 전옥주는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이었으며, 방송국과 관공서 방화범 및 방산업체 군용차량 탈취범들 대부분이 광주시민들이 아닌 외지인들이었으며, 총을 손에 든 연령층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이었다. 아직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는가?

민간인들이 경찰서와 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관공서에 방화하고, 관공서를 점거하여 해방구를 설치한 것은 6·25 전쟁 당시나 1950년대의 빨치산의 행적과 동일하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는가? 광주사태 때 민간인들이 총기 무장하고 해방구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친정부 무장 시위였으므로 정당하다는 면죄부를 김영삼 정부 사법부가 해주었다.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김영삼 정부 5·18 판결문을 읽어보았는가? 그 내용은 광주시민군은 당시 제4공화국 헌정질서인 유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최규하 대통령을 수호하는 친정부 시위대였으므로 헌법기관이라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5·18 법관들은 역사를 아는 자들이었는가? 5·18 성명서를 한 줄이라도 읽어본 자들이었는가?

5·18 유공자 최영철 등 시민군들은 '최규하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으며, 조선대학교 데모대도 유신잔당 물러가라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시민들에게 무기를 반납하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호소하자 무장봉기 지도부는 즉각 투사회보 제6호를 발행하여 "광주시민은 최규하 정부가 총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라는 답변을 최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어 투사회보 제7호의 결의사항도 "현 최규하 과도정부는 물러나라"라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민군은 최규하 대통령 수호 세력이라는 김영삼 정부 5·18 판결은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김영삼 대통령 지시대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가 전두환 피고에게 최고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왜 역대 정부들이 5·18을 재조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재판부는 전두환 피고는 광주 소요 진압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김영삼 정부 5·18 재판은 미완의 재판이었기에 현재까지도 5·18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이다.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광주학살 유언비어를 지어내어 세계 퍼뜨렸거나 그들의 주장이 팩트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제는 지성인들이 광주단체들을 향하여 무슨 근거로 “전두환이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했다 느니 “전두환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고 했다 느니 등의 주장을 한 것인지 물어야 할 차례이다. 지금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광주단체들의 그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5·18 헌법수룩을 발의하고 있는 것인가?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5·18의 이념은 자유민주와는 양숙인 민족민주라는 사실을 알고서 발의하는 것인가? 5·18의 이념은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였다는 사실은 현 5·18진상조사위 위원장 송선태에게 물어보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송선태 등 주동자들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의 가두시위 명칭을 민족민주화 대성회라고 붙였으며, 5·18 성명서에서 민족민주 이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1970년 이래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키려 한 북한이 해마다 국가행사로서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이유도 5·18의 민주가 민족민주임을 광주사태 당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이 5천 명의 5·18 유공자 중에서 5건의 공적 예만 들어주어도 그들의 발의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미국 국무부의 5·18 문건에는 광주사태 당시 5월 24일경 도청에서 시민군들이 인민재판으로 시민들을 처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날짜의 조선일보 사진기록에도 광주사태 가해자가 김인태, 김중식, 정지영 등의 시민들을 납치한 무장시민군들, 즉 5·18 유공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총 있는 시민이 총 없는 시민을 총으로 지배하고 처형한 것이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 만큼 가당한 행위였는가?

전남 가톨릭농민회 회장 서경원은 대표적인 광주사태 주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에 북한 공작금을 받고 있었으며, 1988년에는 김일성이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독대 면담 후 미화 5만 불을 현찰로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5·18 유공자와 김일성 장학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적국으로부터 간첩 공작금을 받은 자가 어떻게 5·18 유공자로 선정되었는가?

화순 출신 광주 건달 신만식과 그의 조직은 화순광업소에서 8톤 트럭으로 여러 대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하여 도청 지하실로 실어다 놓고 뇌관을 연결해 놓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량은 광주시가지 절반을 폭파시킬 수 있는 분량이었다. 누가 가까이서 담배라도 피는 날에는 광주시가 쑥대밭이 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계엄군 도움 없이 광주시민 스스로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도청 지하실에 그런 위험한 폭발 장치를 설치한 자들은 5·18 유공자들이 되었지만 아직껏 도청에 엄청난 양의 폭발 장치를 설치하였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다이너마이트 탈취범들이 광주시가지 절반을 폭파시킬 수 있는 폭발 장치를 도청에 설치한 것은 광주시민들을 인질로 이용하는 행위였는데,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그것이 헌법에 수록할 만한 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

5·18 유공자 배용주는 5월 20일 밤 9시경에 버스로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즉사케

하였다. 5·18 유공자 중에는 폭력전과자들도 있고, 광주시민이 아닌 조폭들도 있고, 여성을 성폭행하고 5·18 유공자가 된 이도 있다. 해남 건달 김유곤은 5월 22일 광주에서 해남 조직원 9명을 인솔하고 다니다가 총기 오발 사고로 두 명의 시민 희생자가 생기게 한 5·18 유공자이다. 5월 21일의 청소년 5·18 유공자는 총기 오발 사고 유공자들이다. 이것은 시민군 증언록인 광주5월항쟁사료전집에 수록된 사실이다. 총기를 다룰 줄 모르는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총을 쏘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다가 여러 건의 총기 오발 사고가 있었다. 영화에서처럼 공수부대 집단 발포 희생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다니다가 낸 오발사고 희생자들이었다.

5월 21일에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청소년 황성술이 아시아자동차에서 탈취한 레커차에 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광산군 동곡면 하산리 하천 밑으로 레커차가 추락하였을 때 다섯 명이 물속에 잠겼으며, 22일에는 운전이 미숙한 시민군이 레커차에 무장 청소년들을 태우고 다니다가 송정리 다리 밑 추락사고를 내어 김영두 군 등 두 명을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다. 5월 21일 광주 외곽에서는 시민군 무기 탈취 차량끼리 충돌하는 대형교통사고도 있었고, 나주 청소년 이종연 군도 시민군이 군용트럭에 무기를 싣고 달리다가 낸 교통사고 희생자였다. 시민군 교통사고를 낸 자들과 그 사고 희생자들이 모두 5·18 유공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량을 탈취하여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광주사태 희생자가 생기게 한 것이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 공적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사태 때 국군 철모를 빼앗아 쓰고, 군용차량을 탈취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총기 무장하고, 방송국과 관공서에 방화하고, 버스와 장갑차와 군용트럭으로 군경을 깔아뭉개 죽이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여 해방구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도청에서 인민재판으로 시민들을 처형했던 자들이 5·18 유공자들이 되었다. 이런 공적들 외에 추가할 공적이 단 5개라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5·18 헌법 수록 발의자들에게 맡긴다. 발의자들은 5·18 유공자들의 공적을 확인해 보거나 찾아보고 발의한 것인가? 단 몇 건이라도 헌법에 수록할 만한 5·18 유공자들의 공적이 있으면 더 이상 감추지 말고 5·18 헌법수록 발의자들이 발표해 달라.

가장 두드러진 5·18 정신은 북한 말씨 증오의 언어로 표현된 증오의 정신이다. 두드러진 5·18 구호는 북한말 구호인 “전두환 찢어 죽이라”였는데, 그 구호를 외쳤던 5·18 유공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전두환이 누군지 전혀 몰랐었다고 증언한다.

재수생 시민군 윤석진은 5월 19일 아침에 시위대는 이미 일본 낫, 쇠스랑, 손도끼로 무장하고 군용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시위 차량 앞에는 '살인마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플래카드를 달고 다녔다고 증언한다. 광주 해방구 상황실장이었던 이재의는 5월 21일 아침에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자들이 그들이 탈취하여 타고 다니던 버스 차체를 몽둥이로 두드리며 ‘찢어 죽이자 전두환’ 구호를 외치며 외곽지대의 골목마다 돌아다녔다고 증언한다.

그런 구호들은 전두환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이지만 그 구호를 외친 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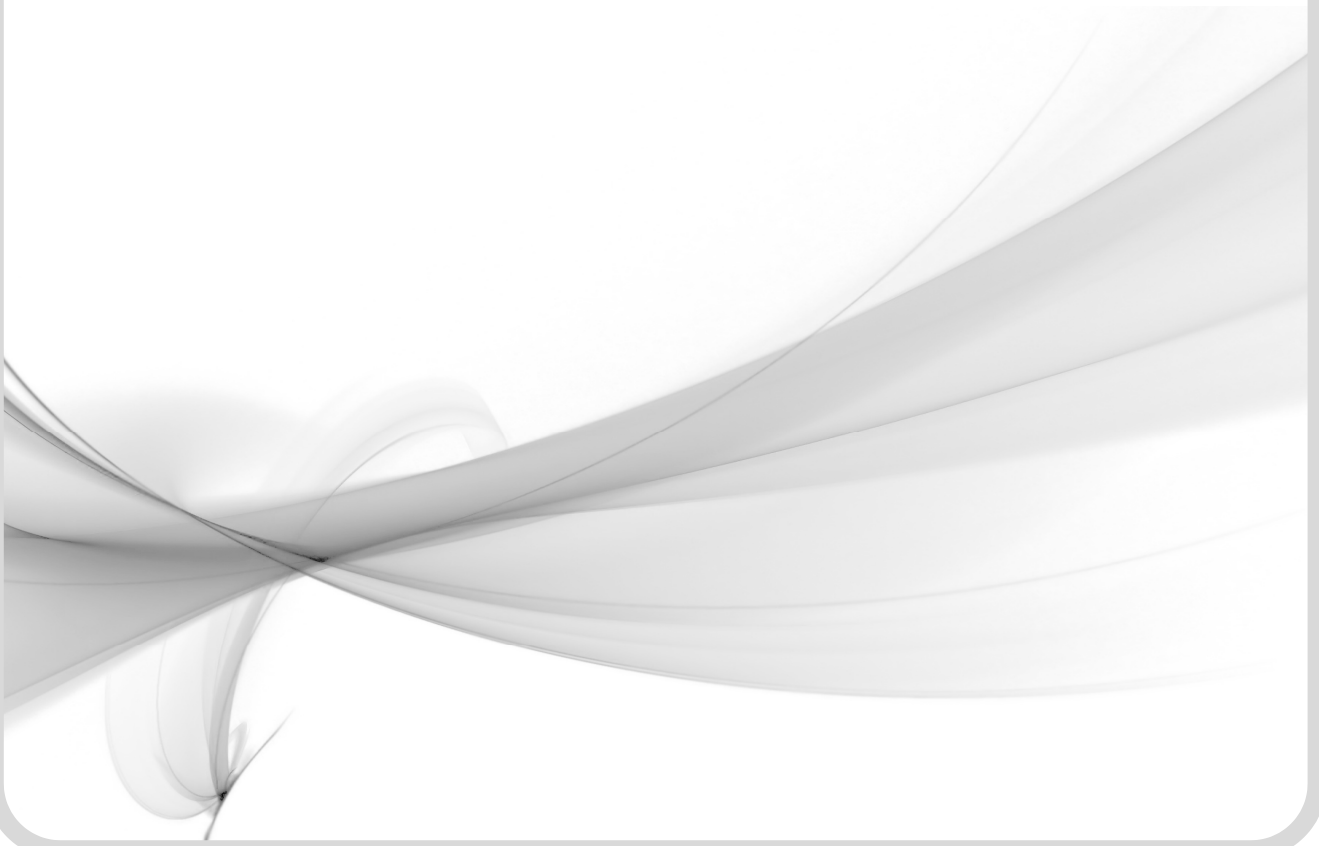
전두환을 막연히 광주시청 직원 등으로 추측했을 뿐 누군지 전혀 몰랐다. 광주상고 야간 2학년생 김행주는 자기는 전두환이 누군지 모르면서 악을 쓰고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고 증언한다. 17세의 중졸 용접공으로 5·18 유공자가 된 최인영은 5월 21일에 남평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한 후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나는 전두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나름대로 '광주사태'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일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목청껏 외쳤다”라고 증언한다.

전두환에 대한 증오의 구호는 있었으나 증오하여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 5·18 헌법수룩 발의자들은 전두환이 어디에서 사는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시민군들이 “전두환 찢어 죽이라”라고 외친 구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찢어 죽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광주사태 당시에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다. 5·18진상조사위의 조사 기간이 이제 두 달 있으면 만료되고, 전두환 광주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은 광주소요 진압작전에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이 더욱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있다. 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이제는 광주학살의 누명을 벗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북한말로 “전두환 찢어 죽이라” 구호를 외치는 정신을 유지할 것인가?

5·18 유공자들의 공적은 공공 숨기고 감추면서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쪽 국민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은 온 국민을 위한 헌법임에도 국민을 양편으로 갈라치기 하여 편향된 집단만을 위한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우리는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을 반대한다.

“5·18 헌법수룩에 반대하는 이유”

발표: 강희중



5·18 헌법수룩에 반대하는 이유

강희중 'Korea Inside Out' 저자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의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등 연합국에 대한 항복선언으로 해방되었다. 38도 이남의 미군정 체제하,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투쟁 끝에 자유민주 체제 신봉자인 이승만을 필두로 한 우익의 승리를 통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김일성을 앞세운 소련 공산당의 폭압과 폭정을 피해 38도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온 자유 투사들도 대한국민이 되었다. 이 3년간의 좌우익 대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등 좌익 공산주의 세력의 잔인한 폭력성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건국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김달삼이 총사령관이 된 인민해방군이 폭동을 일으켰다. 경찰지서 12곳을 습격하여 경찰과 그 가족을 비롯한 우익에 대한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했고 이후로도 그 피해는 커져만 갔다. 대한민국 건국 2개월이 지난 10월 19일에는 전남 여수의 14연대에서 제주4·3폭동을 진압하라는 지시에 항명하며 무장 봉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을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우익에 대한 테러와 인민재판이 행해졌다. 지리산 빨치산의 모태가 된 여순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합세하듯 10월 24일 제주도에서는 김달삼의 뒤를 이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좌익들의 폭동·반란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계엄선포와 국가보안법으로 대응하고 군내 좌익들을 의법 처리하는 등 숙군작업을 진행했다. 심지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좌익 사범들을 전향시켜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강동정치학원이라는 게릴라 양성소를 통해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 등 대한민국의 후방교란을 위해 수백 명 규모의 부대를 투입했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전면 기습남침으로 소위 '민족해방전쟁'을 일으켰다. UN군의 도움으로 기사희생한 대한민국은 지켜졌으나,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화전양면술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테러와 지하당 조직 및 재건 사건 등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혼란케 해왔다. 효선, 미순 사건을 이용한 반미시위, 광주병 난동, 세월호 사건과 유엔비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쿠시마 오염수 난동 등 끊임없는 소요 사태의 배후에는 북한이 존재해왔다.

이처럼 한반도에서는 해방 이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좌우익의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김영삼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익정권에서는 자신들의 반체제,

반국가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착시켜왔다. 또한 운동권을 포함한 좌경화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항적인 폭동·반란을 ‘사건’으로 단순화하거나 ‘항쟁’으로 고쳐 부르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민주항쟁’, ‘민중항쟁’ 등으로 개칭하여 위화감을 없앴다.

광주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 수호 세력인 최규하 정권의 계엄군에 대해 항적인 정체불명의 인원들과 광주 운동권(빨치산 세대, 6·3세대, 민청학련 세대,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세대 등) 그리고 이들의 유언비어에 속은 청소년, 농마주이, 일반인 등 일부 광주시민 사이에서 벌어진 무력충돌 사건이다. 정체불명의 괴한들은 5월 21일 전남 각지 44곳(혹은 38곳)의 무기고에서 소총,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등을 삼시간에 탈취했다. 그리고 동일 오후 4시경 전남대학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누군가가 설치한 두 정의 기관총 때문에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계엄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2일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의 현지 담화, 25일 최규하 대통령의 현지 방문 및 특별담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전단지 살포와 방송을 통한 술한 선무 활동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광주시를 무질서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자들의 무기를 회수하기 위해 27일 새벽도청을 수복하며 이 소요 사태는 막을 내렸다.

광주 정치인들과 유공자들을 포함한 일부 시민들은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기간을 ‘광주 해방구’라고 부르며 살기 좋은 ‘대동세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다. 과연 광주 해방구가 지속되었다면 지금 광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제2의 6·25가 터졌다’라며 손수레에 가구와 잡동사니를 싣고 피난 가던 사람들과 강아지 한 마리 돌아다니지 않던 광주 해방구. 당시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방송과 전단지에 따라 출입을 삼가고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또한 정식 교육 없이 총을 집어 든 자들로 인한 오발 사고와 폭도들에 의한 살해 협박, 건물 침입, 차량 탈취, 기물 파괴, 살인, 방화가 자행된 것이 5월 광주의 진상이다.

당시 북한이나 일본에서도 ‘광주폭동’이라고 불리던 이 사건을 현재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격상시켜 부르고 있으나, 반체제 운동권들과 추종 세력들은 여전히 ‘광주민중항쟁’이라고 부른다. 국립5·18민주묘지 중앙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40m 높이 탑의 이름도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다. 또한 매년 5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주관단체 이름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다. 왜 이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이 아닌 ‘민중항쟁’이라는 이름을 고수하고 있는가? 참고로 반체제 운동권들과 추종 세력들은 대구 10월 폭동을 ‘10월 항쟁’으로, 제주 4·3폭동반란을 ‘4·3민중항쟁’으로, 여순반란을 ‘여순항쟁’으로, 부마사태를 ‘부마민주항쟁’으로, 6·10사태를 ‘6·10민주항쟁’으로 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우리는 ...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문구가, 국민의 힘 강령 전문에는 ‘우리는 ... 4·19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또한, 2014년, 헌법재

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선고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에는 ‘통합진보당은 ...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 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다. 이러한 항쟁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항거였으며, 그동안 ‘민주화운동’이라는 가면을 써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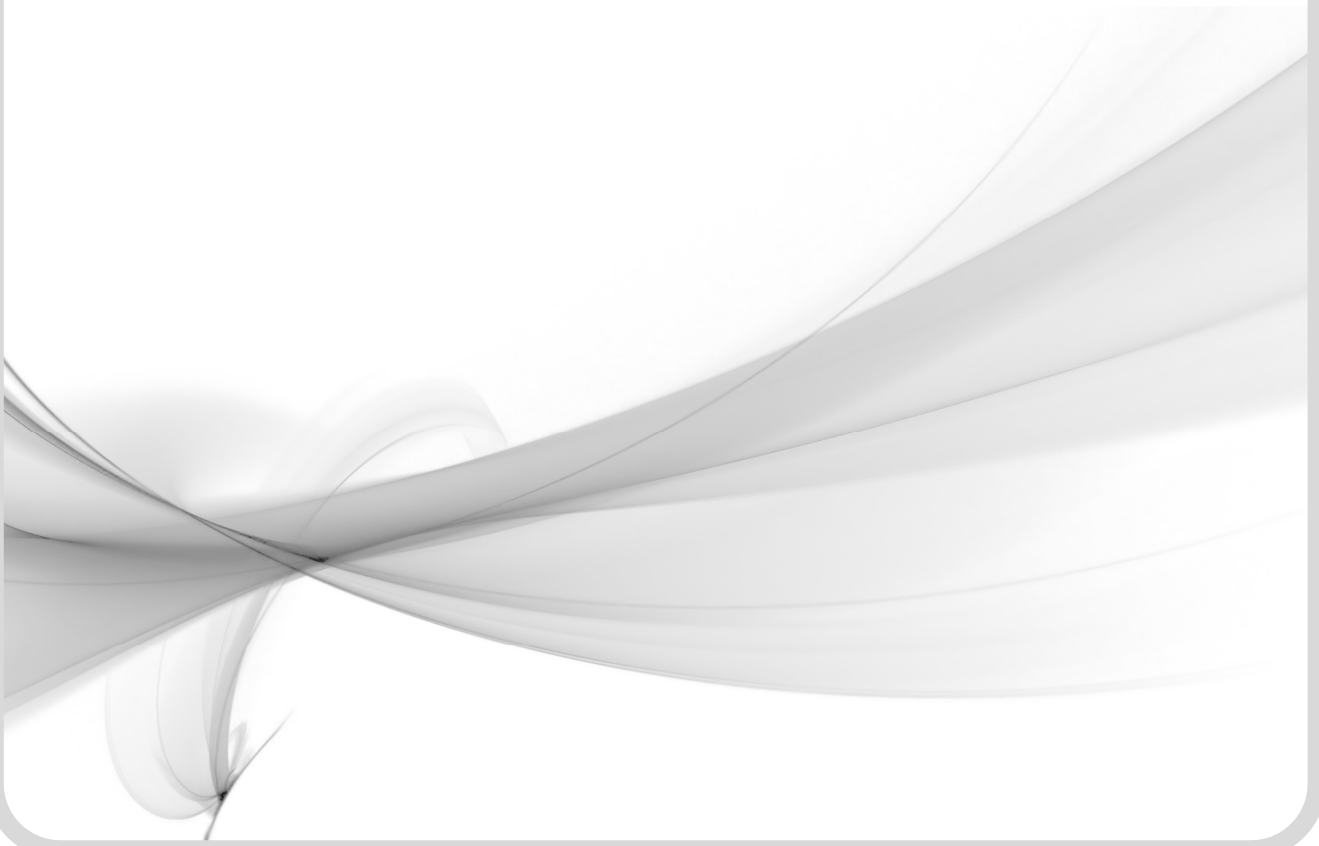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며,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인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있다. 이로써 휴전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인 독재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체제 속에서 오늘날의 풍요를 대한민국인이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적, 종북, 불순세력 통합진보당 등이 추구하는 ‘항쟁정신’을 헌법전문에 삽입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5·18은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불개입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1973년 8월 15일 결성된 반국가단체 재일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수괴이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2000년 북괴 김정일과 반헌법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했으며, 국정원 공작과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같은 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김대중의 ‘김대중 정신’인 거짓된 ‘민주, 인권, 평화’와 상통하는 광주 정신인 5·18정신을 헌법에 삽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김대중이 뿌린 씨앗인 ‘6·15공동선언 발표 6주년 기념’으로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2006년 6월 14일 오후 4시 5·18 묘역에서 헌화 후 5초간 전체 묵념을 한 일이 있었다. 1980년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최규하 정권에 맞섰던 소위 ‘5·18 민주 영령’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국적자들이 무슨 이유로 폭우 속에 우산을 모두 접고 5초간 전체 묵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년 5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행사에서도 ‘5월에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광주민중항쟁기념사업회와 추종 세력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이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밝혀야 한다.

언제나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좌우익 대립이 지속 중이며, 우리 세대와 후손들의 자유 그리고 국운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 헌법 전문에 좌익들이 주장하는 반체제, 반헌법, 반국가 정신을 삽입하겠다는 것은 적에게 투항하는 자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외치는 좌익들의 선전·선동을 들을 때면 실소를 금치 못하지만, 무엇에 속아있는지 모르는 자칭 보수우익과 자칭 대한민국인을 보면 통탄할 노릇이다. ‘5·18 헌법수룩’ 주장을 계기로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전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진정한 대한민국인이 되자!

“5·18 정신이 뭐길래?”

발표: 김동문



5·18 정신이 뭐길래?

전 전남매일신문 기자 김동문

5·18정신 헌법 수록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다!
5·18 정신은 무엇인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서 시작된다.

광주사태 43주년이 되는 지난 5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김기현 대표 주제로 열렸다, 회의 주제는 황당하게도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43년 전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 전남도청을 경비 하던 향토사단 계엄군과 경찰국 산하 전투경찰들을 공격 사살하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무장 시민군의 행위를 5·18정신이라 정의 내릴 수 있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이들은 도청 점령 6일 전인 15일부터 “계엄령을 해제하라.” “신현확은 물러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21일 전남 도내 44개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하고 도청을 점령했고, 화순광업소에서 탈취한 폭약(다이내마이트) 8톤분을 도청 지하에 설치하고 광주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대정부 협박을 했다,

이것도 5·18정신이며 광주 정신인가? 무력으로 점거한 전남도청을 해방구라 선포한 국가 반란 세력들의 공적을 헌법정신에 수록하겠다는 것인가? 김기현 하태경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점령군이 선포한 해방구란 의미를 아는가? 해방구의 어원은 북한의 인민해방전선과 중국혁명의 과정에서 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는 지구를 해방구라 말한다. 한 국가 안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지역을 해방구라 한다.

그렇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가관을 담고 있는 것일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운동은 묘하게도 여당과 야당, 우익과 좌익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헌정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을까?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묻는다. 5·18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5·18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뻗어있는가?

집권 여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여의도 국회 회관도 아닌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센터까지 찾아와 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 수록의 정당성을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결국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광주 정신과 5월 정신의 의미가 5·민주항쟁임을 인식강조 한 것이다.

이제 1980년 5월 광주 현장을 지켜본 필자(김동문)가 반론을 제기한다,

5·18 당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은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광주시민의 아픔과 통곡을 외면한 채 미국으로 망명했다. 바로 노벨평화상의 주인공 DJ가 바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정의한 장본인이다.

김대중은 광주사태 하루 전 5월 17일 예비 검속되었고 후에 내란음모죄로 사형이 선고됐다(1982년 11월).

당시에 그는 우선 사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걸 그대로 인정했다. (5·18이 불순 세력들의 내란에 무장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였다) 이렇게 조사에 순순히 응한 김대중은 훗날, 이 진술을 180도로 뒤집는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전 방송에 출연, 5·18 당시를 회상하며 “저 역도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으며 차라리 내 목숨을 던지고 말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김대중은 감옥에서 1차 편지를 보내 목숨을 구걸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하고 저 역도들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1982년 12월 13일 당시 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서신 일부이다.

[전두환 대통령 각하

국사에 전념하신 가운데 각하의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앙축 하나이다.

각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인은 교도소 재소 생활이 2년 반에 이르렀사운데 본래의 지

병인 고관절변형, 이명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어 치료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출국 허락만 해 주신다면 미국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받고자 희망하운데 허가하여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각하의 선처를 양망하옵니다.]

5·18 사태 직후 오열하는 광주를 뒷전에 두고 혼자 살아남겠다며 보낸 문제의 편지 내용 중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5·18이 단순 시위 데모 수준이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북괴의 지원으로 무력 내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를 남긴 것이다.

5·18 이후 북괴는 광주 민중봉기 기념관을 세우고, 5·18 잠수함을 만들고, 역마다 5·18을 찬양하는 구호를 새겨 놓고 해마다 평양중앙노동자 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이 북한에 5·18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것인가, 광주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잠수함 명을 새겨 넣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투쟁을 한 것인가, 광주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기념행사를 기대하며 폭도의 오명을 들으며 끝까지 싸웠던 것인가?

자신 있게 답하고 말할 수 있는 광주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5·16혁명이 군사반란으로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뀌어졌다.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힘의 역사는 무엇이든 또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는 옥중서신 후 곧바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날 당시 20년으로 감형된 상태이지만 미국에 도착하자 강제 추방했다는 거짓으로 자신의 건재를 부각시켰다.

세계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광주 시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단호하게 반정부무장 폭동으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하태경 의원에게 묻는다. 국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헌법수룩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남조

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남민전) 전사 출신이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된 대한민국의 지하조직 형태의 테러단체로서 베트남이 펼쳤던 게릴라전을 통한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는 불법단체였다. 1979년 이학영 의원은 김남주 시인 등과 더불어 혁명자금을 만들기 위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잠입하여 경비원을 묶고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되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여의도 국회 회관이 아닌 천릿길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까지 찾아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공언하다니….

5월 27일, 새벽 무장폭도들의 무기 강제 회수 작전을 맡은 특공중대는 제3공수특전여단 11중대였으며, 장교까지 합해 총인원이 70여 명이었다. 특공 중대는 폭도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도청 구간에서는 단 한 발도 폭도들에게 쏘지 않았다. 도청 구간의 시민군 사망자 12명은 모두 도청 2층 시민군들이 도청광장에 배치된 자기편을 향해 맹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군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시민군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특공중대는 단 한 발도 폭도들에게 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엄군 한 명이 폭도 총에 맞고 전사하였다. 장원복 하사는 로프를 타고 도청 뒷담을 넘던 중 폭도들이 전남도청 4층 옥상에서 쏘는 기관총에 목을 맞아 전사하였다.

그럼에도 5·18 단체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8묘역에 묻힌 24명의 국군과 전투경찰관의 묘비, ‘광주에서 전사’로 새겨진 묘비를 40년이 흐른 2020년 12월 28일 다시 만들어 전사를 순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 주는 표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가권력의 근거이자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세기에 이른 43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알뜰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진상 규명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5·18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5·18 헌법전문 수록을 주장한 국회의원들부터 출선수범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헌법수록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먼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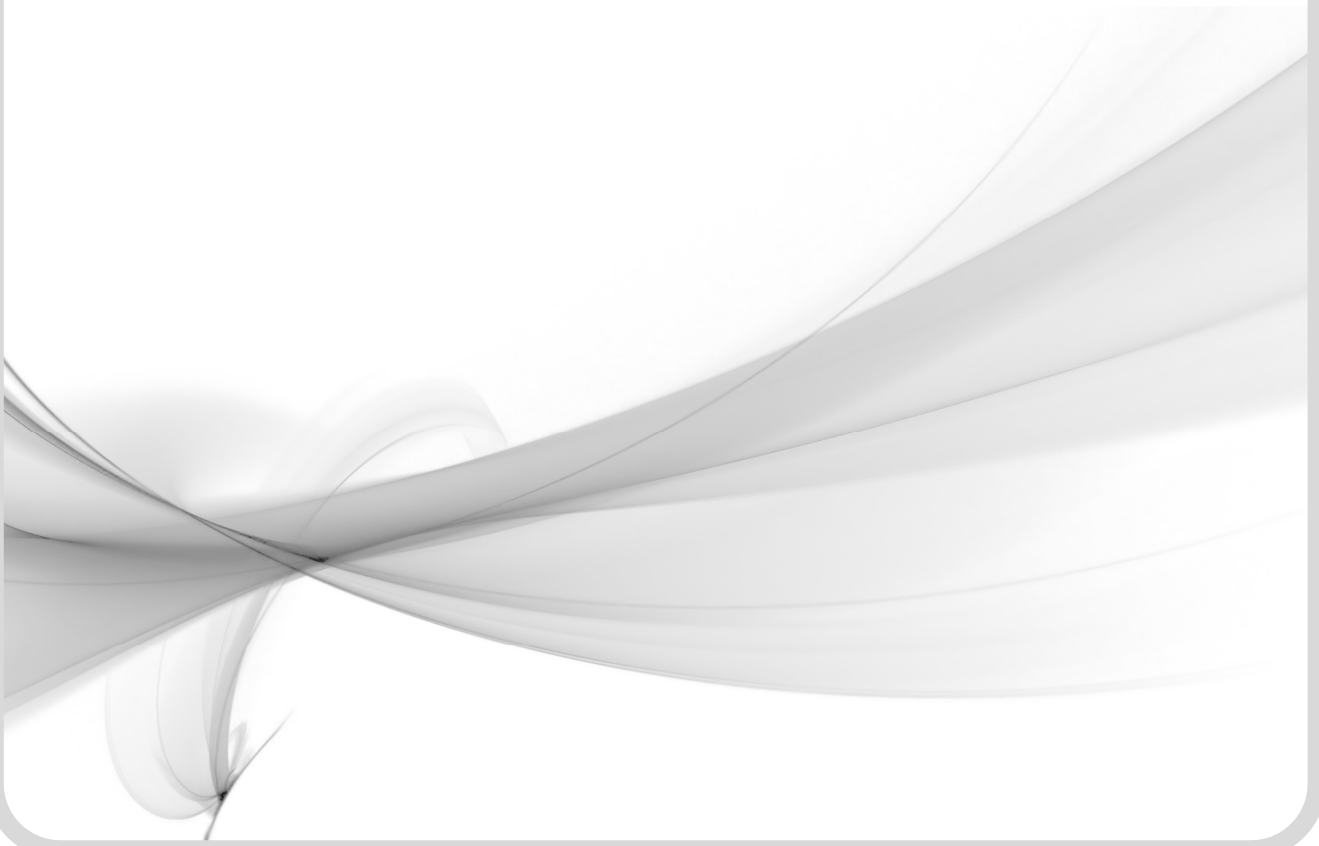
5·18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서 먼저 다뤄진 사건이다. 2021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봉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법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5·18 헌법수록을 반대한다. 나아가 5·18 헌법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시민운동도 펼쳐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의 헌법수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 때문이다.

“5·18 헌법수룩 반대 세미나 참석 소감”

영상 발표: 김대령



5·18 헌법수룩 반대 세미나 참석 소감

김대령 재미사학자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깝고,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는 때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정보국의 모든 5·18 문건을 분석하여 북한의 5·18 문건 및 한국의 5·18 기록물과 비교하며 『김일성 교시와 5·18』을 집필하고 있는 김대령 박사입니다.

지난 5월 17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은 5·18 명령들 앞에서 헌법 전문수룩을 선언하라”고 촉구하자, 22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민식 보훈처장 후보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공약하고, 8월에 하태경, 성일종, 이학영 의원이 5·18 헌법수룩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5·18 세력이 자꾸 공룡처럼 커지는 때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공룡처럼 커진 5·18의 거짓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승리는 항상 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념의 정체성에 대한 첫 경종은 21년 전인 2002년 초겨울부터 시작된 광화문 반미 촛불시위였습니다. 그해 6월 13일의 효순이와 미선이의 미군 장갑차 운화사고를 주한미군 철수에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조직한 반미 촛불시위는 날로 커졌으며 한총련 등 종북세력은 제야의 종이 울릴 때 백만 명이 모이면 김정일 통일 대통령 원년을 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경도 미국도 막을 수 없었던 그 거대한 반미 촛불시위를 누가 막았던가요? 광화문 반미 촛불시위는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낸 분들이 막았습니다.

오마이뉴스 김기보 기자가 양마라는 네티즌이 모 신문사 게시판에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벌이자. 손에 촛불을 들고 모이자’라고 호소하는 글을 썼다며 오마이뉴스에 크게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며칠 만에 엄청난 인파의 반미 촛불시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소수의 애국시민들이 단합하여 광화문 반미시위는 김기보 기자의 자작극으로 선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 김기보 기자가 양마라는 닉네임으로 촛불시위 호소문을 쓰면 김기보 기자가 제3자의 글에 감동하여 보도하는 것처럼 크게 보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네티즌 양마는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KBS가 보도되자 그날로 촛불이 꺼졌습니다.

2008년 여름에 일만 명의 전경 병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광우 반미 촛불시위를 우리가 어떻게 막았던가요? 그때도 마치 광우의 난 같았던 거대한 군중의 촛불시위를 소수의 애국시민들이 팩트 대결로 막았습니다.

광우병 반미 촛불시위의 발단은 고(故)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死因)에 대해 미국

보건 당국의 게시물에 대한 MBC PD수첩의 그해 4월 29일 자 방송이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혀 그녀가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한 적이 없었음에도 MBC PD수첩이 고의로 오역한 사실을 저를 포함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밝혀내고, MBC PD수첩의 오역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자 그날로 촛불이 꺼졌습니다.

5·18 역사 전쟁은 본질적으로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며, 우리에게는 팩트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팩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6·25 전쟁 때 침략군이었던 정율성 기념사업을 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 헌법수룩을 촉구하자 주사파 출신 하태경 의원과 남민전 출신 이학영 의원이 5·18 헌법수룩 발의하였을 때 우리는 국가 정체성 위기의 경종이 울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이 또한 5·18 이념 사기극의 허점이 가장 노출되는 때이며, 5·18의 이념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물결로써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물결은 5·18 이념 사기극으로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 선언”

변성필



우리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한다!

변성필

1) 5·18에서 거룩한 “님”으로 추앙받는 윤상원은 “5·18이란, 국가권력 타도를 위한 무장봉기(박노해의 윤상원 평전에서)”라고 주장했습니다.

2) 5·18의 대부 황석영은 그가 쓴 책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에서 “5·18은 통일을 위한 무장투쟁이요 광주는 분단으로부터 해방시킨 일시적 해방구였다.” 였다고 밝혔습니다.

3) 5·18에서 시민군 대장이었던 김종배에 따르면
“5·18은, 반체제, 재야인사, 불순세력, 학생이 전국규모로 들고 일어나 과도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4) 이름이 널리 알려진 노동운동가 백태웅은 “5·18은, 시민항쟁을 벗어난 반란이요 혁명이며, 주권 탈취의 한판 싸움, 실패한 무장봉기, 위대한 민족민주혁명의 시도, 광주는 무장봉기의 도시요 권력을 일시적으로나마 직접 소유한 소중한 경험을 가진 혁명의 도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5) 최규하 정부 퇴진을 위해 5·18무장봉기를 적극 선동했던 김성용 신부는 5·18 사태를 “천대받은 전라도의 한을 표출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5명은 5·18 사태 주동자들로서 그들의 주장 그대로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아님을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주장에 이어 동학란, 부마사태와 6월 사태가 헌법 전문에 수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70년대 남파된 '거물 간첩' 김용규는 '민주화'란 용어는 북괴가 1960년대 대한민국 내의 불순분자를 포섭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반영되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했다간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6공화국 헌법 전문에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실행됐을 때 사용된 '조국의 민주개혁'과 4·19 민주 이념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헌법에도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6공화국 헌법전문은 현실이 이러할진대 여기에 동학, 부마 사태, 5·18 사태, 6월 사태 등을 수록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전면 반대합니다.